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**발 의 자 : 정영길 의원**외 7명

2. **제정이유**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(6.25전쟁 및 월남전쟁)를 위한 행·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가. 참전유공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근거 규정(안 제3조)
나.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내용 규정(안 제4조)
다.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규정(안 제6조)
라.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(안 제7조)

4. **관련법령**

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**검토의견**

☐ **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☐ **본 제정 조례안은**

○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6.25전쟁 및 베트남(월남)전쟁에 참전한 생존유공자는 현재 대부분 고령이거나 노인세대입니다.

○ 목숨을 걸고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싸웠던 이분들의 명예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아울러 군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면서,

○ 특히, 이분들이 생전 및 사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위한 **행·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**하기위하여 정영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

□ 주요내용은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11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내용, 지급대상자 결정, 지급방법 및 시기, 지급중단,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다만, 참전명예수당(1인당 월 2만원 지급)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(557명, 89,120천원)하였지만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1인당 15만원 지급)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